# 대의원총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칙은 개혁주의적 성경관에 입각하여, 대의원총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교 학생활동에 도움을 주고, 대의 기관으로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등록) 대의원은 임기 초에 대의원총회 사무국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예산 및 결산 감사)는 3월,6월,9월,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 (임시회) 임시회는 재적 대의원 1/4, 대의원총회 의장, 상임위원회,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제6조** (공고) 모든 회의의 소집 공고는 집회 개시일의 3일전까지 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2장 대의원총회의 회기

#### **제7조** (회기)

제1항 정기 회기는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 회기는 회칙이 정하는 임시회의 개회 조건을 충족할 시 정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의원총회의 기관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정수) 대의원총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둔다.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와 권한)

제1항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2항 의장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동시 궐위 및 탄핵 시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될 때 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유고상황으로 인하여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임시의장) 유고상황으로 인하여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시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선출한다

**제13조** (의장, 부의장의 출마 자격) 재적 대의원 중 5학기 이상의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하며, 부의장은 3학기 이상의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다

#### **제14조** (의장의 선거)

제1항 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어 대의원총회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항 의장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3항 전항을 충족하는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 (의장의 사임)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 부의장의 겸직 제한) 의장, 부의장은 총학생회 내의 어떤 직위도 겸직할 수 없다. 단, 유고 상황으로 인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동시 궐위 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7조 (대의원총회의 부서)

제1항 대의원총회는 제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호 사무국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호 서기국은 대의원총회의 명부, 의사록, 문서, 성명을 작성, 보존한다.

3호 회계국은 대의원총회의 재정과 금전의 출납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4호 홍보국은 대의원총회의 대외적 업무와 홍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제2항 대의원총회의 부서는 국장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두며, 대의원총회 의장이 재적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항 전항 이외의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추가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장 대의원총회의 경비

제18조 (대의원총회의 경비) 대의원총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총학생회 예산에 계상한다.

### 제5장 대의원

# 제19조 (임무 및 권한)

제1항 대의원은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대의원은 총학생회의 예·결산 심의 및 사업 전반의 감사권을 갖는다.

제3항 대의원은 의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받는다.

제4항 대의원은 기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20조 (겸직 제한) 대의원은 총학생회의 집행부나 운영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21조** (선거)

제1항 대의원은 본교 전체 학과의 각 학년별 1인으로 한다. 단, 1개 학년의 재학 인원이 60인을 초과할 경우에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2항 대의원선거는 본교 전체 학과 학년별 재학생 전원 대상으로 실시하며, 과반수의 투표율과 참여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자에 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선출된다.

제3항 2항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각 과 학회장의 추천과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제4항 대의원 선거는 총선거 기간에 실시한다. 단, 1학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실시한다.

제5항 선출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사무국에 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장 상임위원회

#### 제22조 (지위)

제1항 상임위원회는 본회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2항 각 학과의 대의원회를 대표, 주관한다.

제23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과 의장이 임명하는 각 학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겸임한다.

**제25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 및 회부된 청원, 감사, 탄핵의결, 기타 심사를 요하는 사항을 심사, 의결 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정족수)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공청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8조 (심사보고서)

-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또는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본 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대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위원장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대의원총회에서 의제가 될 때 위원장은 그경과와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때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보고를 대신하게 할 수있다.

#### 제7장 회의

## 제30조 (의사 정족수)

제1항 대의원총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항 회의 중 1항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1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항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2항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3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 의장은 의사 요청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33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1항 대의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항 의안을 발의한 대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안건 회부) 의안의 발의, 제출 시 의장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배부하고 보고한다.

**제35조** (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6조 (동의)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7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일 년도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38조** (안건 심사) 대의원총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제39조** (수정동의)

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대의원 3인 이상의 찬성과 연서로 미리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 제40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제1항 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2항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제3항 대의원의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제4항 대의원총회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제5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 (의안의 이송)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송된다.

제42조 (발언의 허가) 대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의장의 토론의 참가 제한)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제44조 (의결 정족수)

제1항 (의결 정족수) 의안은 총학생회칙 또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2회 이상 소집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못할 때에는 상임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표결의 참가) 표결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 방법)

제1항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2항 의장이 의안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대의원으로 하여금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표결 결과의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8조 (회의록)

제1항 대의원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히 기재한다.

1호 개의

2호 기도자의 성명

3호 의사일정

4호 출석대의원의 수

5호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동에 관한 사항

6호 의장의 보고

7호 위원회의 보고서

8호 의사

9호 표결 수

10호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 기록된 회의록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및 임시 의장이 확인한 후 대의원총회에 보존한다 제49조 (회의록의 배부 반포) 필요할 경우 회의록은 대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 학생에게 공개한다.

#### 제8장 청원

#### 제50조 (청원의 제출)

제1항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우는 대의원총회에 청원이 가능하다.

제2항 의장은 청원서가 접수된 때에 해당 청원의 요지를 문서화하여 각 대의원에게 배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3항 청원을 접수한 대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51조 (청원서의 이동과 처리)

제1항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이동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즉시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대의원총회의 학교 및 총학생회와의 관계

제52조 (인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 부장과 총학생회칙에 기재된 임원에 대해 인준권을 갖는다.

**제53조** (총학생회장, 집행부 부장의 발언) 총학생회장 및 회칙이 보장하는 대의원 회의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가진 기타 임원이 이를 행사하려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4조 (총학생회원 출석요구)

제1항 대의원총회는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운영위원 또는 학교 관계당국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

# **제55조** (감사권)

제1항 대의원총회는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내의 사업 전반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대의원총회의 감사권은 다른 어떠한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다.

#### **제56조**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제1항 대의원총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제 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57조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대의원총회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은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배부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공포한다.

# 제59조 (감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1항 감사 결과 중 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즉시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0조 (탄핵의 발의)

제1항 탄핵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발의된 탄핵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된다.

제2항 탄핵의 발의에는 피탄핵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1조 (회부된 탄핵 사건) 상임위원회는 탄핵의 발의를 회부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탄핵 의결서) 대의원총회의 탄핵의 의결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을 기재한 탄핵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1항 피탄핵자의 성명 및 직위

제2항 탄핵의 사유

제3항 안건의 심의 경과

제4항 기타 조사 및 참고 자료

제63조 (탄핵 의결의 송달 및 효과)

제1항 탄핵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탄핵 의결서를 피탄핵자에게 송달한다.

제2항 대의원총회의 탄핵 의결에 의하여 그 대상자는 그 직위를 상실한다.

#### 제10장 질서 유지 및 징계

**제64조** (회의의 질서유지) 대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행위를 할 때는 의장은 그 행위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의원을 당일회의에서 발언 중지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65조 (징계 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항 의장의 겸직 사임 권고에 불응할 때

제2항 대의원이 그 직무를 해태 할 때

# 제66조 (징계 방법)

제1항 의장은 징계 사유가 있는 대의원에게 우선 경고한다.

제2항 당해 대의원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직을 박탈한다.

제3항 제2항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거나, 상임위원회의 2/3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1**장 **보칙**

제67조 대의원총회는 학생자치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2장 부칙

제68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